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양 의원(찬성자 : 15명)

나. 의안번호 : 제2592호

다. 발의일자 : 2021. 08. 11.

라. 회부일자 : 2021. 08. 18.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안 제34조제1항제1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제9조1)에 근거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²⁾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제1항제11호)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제34조(감면)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2. (현행과 같음)

■ 중증장애인 현황 및 비용추계

- 서울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2021.2월말 기준

-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8,572명으로, 이를 세대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비용추계서(원안 참조)를 참고하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수는 한국전력의 ‘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세대(2020.1.~12월)’를 준용할 수 있는데 전년도 평균이 103,714세대이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동 개정안과 같이 중증장애인 세대에 월 10m³이내 사용량을 면제할 경우 연간 약 49억 78백만원³⁾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2021.2월말 기준)

(단위 : 명)

장애 유형	합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합 계	393,636	148,572 (38%)	89,155	59,417	245,064 (62%)	138,961	106,103

■ 법리적 검토 등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4)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5)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지방공기업법」 제14조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

3) 103,714세대 × 10m³ × 400원/m³ × 12월 = 4,978,272천원

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목7)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발생될 연평균 49억 78백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세입감소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주관부서인 물순환안전국 역시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복지정책실 장애인 자립지원과)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이 된다는 전제 하에 동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부서인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대상자 정보 제공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8)를 표명(장애인자립지원과-14982, 2021.8.19.)하고 있으므로 법리적 타당성은 있다 할 것임.

7)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 다. (생략)
2. (생략)

8) ※ 2022년도 신규예산 약 91억원(상·하수도요금 감면액) 요구 완료 (장애인자립지원과 → 예산담당관)

- 참고로,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감면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 관련 주관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감면대상자를 일괄 정리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개별 신청 없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 한편,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수도조례”）」을 김소양 의원이 발의하여 금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 본 개정안 부칙이 시행일자를 2022.1.1.일자로 하고 있으나 요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22.1.1.일부터 상수도 요금인상(2차) 및 업종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요금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2022.5월 납기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이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 내용 중 안 제34조제1항제11호의 경우 박기열 의원이 지난 5월 28일 발의하여 20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06호) 같은 조항의 제11호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표 3]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p>현행 (서울특별시조례 제8106호, 2022.1.1. 시행)</p>	<p>개정안 (의안번호 제2619호, 2021.8.11. 발의)</p>	<p>수정안</p>
<p>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 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 공급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p> <p>12.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p> <p>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 공급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 제</p> <p>1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p> <p>12. ----- ----- ----- --</p> <p>1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 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u></p>